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9. 15.(월)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목 차

1. 검토과정 .....	1
2. 제출사유 .....	1
3. 추가경정예산 개요 .....	1
1) 회계별 예산규모 .....	1
2) 세출예산 총괄 .....	2
3) 신규 사업 내역 .....	3
4. 검토의견 .....	8

# 202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 2711호
- 제 출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2. 제안사유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추가경정예산 개요

###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447,087,932	335,055,441	112,032,491
일 반 회 계	445,201,677	333,213,013	111,988,664
특 별 회 계	1,886,255	1,842,428	43,8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9,327	75,500	43,827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766,928	1,766,928	0

## 2) 세출예산 총괄(조직별)

(단위: 천원)

구분	조직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b>총 계</b>		447,087,932	335,055,441	112,032,491	33.44
일반회계	계	445,201,677	333,213,013	111,988,664	33.61
	경제환경국	156,342,781	93,439,575	62,903,206	67.32
	경제산업과	67,651,402	13,169,504	54,481,898	413.70
	교통행정과	9,960,748	9,321,884	638,864	6.85
	교통지도과	16,924,624	13,300,856	3,623,768	27.24
	환경과	4,749,645	4,477,467	272,178	6.08
	청소자원과	31,513,409	29,800,716	1,712,693	5.75
	농업정책과	25,542,953	23,369,148	2,173,805	9.30
	건설도시국	165,643,447	129,644,489	35,998,958	27.77
	건설과	101,040,424	87,085,424	13,955,000	16.02
	안전총괄과	4,604,871	4,482,248	122,623	2.74
	도시정책과	16,871,077	9,498,961	7,372,116	77.61
	도시정비과	22,436,382	15,858,302	6,578,080	41.48
	건축과	1,560,096	1,556,796	3,300	0.21
	하수하천과	17,304,250	9,338,126	7,966,124	85.31
	토지정보과	1,826,347	1,824,632	1,715	0.09
	문화관광국	79,909,030	67,544,690	12,364,340	18.31
	문화예술과	23,039,431	20,155,125	2,884,306	14.31
	체육진흥과	16,473,223	12,392,129	4,081,094	32.93
	관광과	13,451,856	10,837,616	2,614,240	24.12
	산림과	26,944,520	24,159,820	2,784,700	11.53
	보건소	31,310,048	30,723,158	586,890	1.91
	보건과	15,325,008	15,253,037	71,971	0.47
	건강증진과	15,985,040	15,470,121	514,919	3.33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11,996,371	11,861,101	135,270	1.14
	특별회계	계	1,886,255	1,842,428	43,827
경제환경국		1,864,755	1,822,528	42,227	2.32
경제산업과		97,827	55,600	42,227	75.95
청소자원과		1,766,928	1,766,928	0	0.00
건설도시국		21,500	19,900	1,600	8.04
하수하천과	21,500	19,900	1,600	8.04	

### 3) 신규 사업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경제산업과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지원	30,000	0	30,000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10,000	0	10,000	
	민생회복 업무 보조 인력 (예산성립전 사용 국 85,680천원)	95,200	0	95,200	
	민생회복 소비쿠폰	51,457,345	0	51,457,345	
	구지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270,000	0	270,000	
	구지농공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384,000천 원)	584,000	0	584,000	
교통지도과	하빈면 감문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	0	100,000	
	하빈면 동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0	0	1,000,000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	200,000	0	200,000	
환경과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사업	1,100	0	1,100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	6,991	0	6,991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15,000	0	15,000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품구입(예산 성립전 사용)	65,450	0	65,45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80,417	0	180,417	
	아줌마 대축제 홍보부스 참가비	16,500	0	16,500	
	영호남 문화교류대전 홍보부스 참가비	5,000	0	5,000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품구입 (예산성립전 사용)	67,000	0	67,000	
	철거 및 감정평가비	147,000	0	147,00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자 포함)	97,870	0	97,870	
	기본형 공익직불금(이자포함)	200,983	0	200,983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이자포함)	296,780	0	296,780		
건설과	논공 위천1리 위천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0	50,000	
	가창 옥분리(파티마요양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98,000	0	198,000	
	가창 옥분리(65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0	700,000	
	가창 상원2리(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0	200,000	

부서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가창 중주리(26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98,000	0	98,000	
	구지 고봉리(34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0	100,00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100,000	0	100,000	
	옥포 송촌리 353-1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00	0	25,000	
	옥포 간경리 498-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	0	30,000	
	옥포 간경리 77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	0	30,000	
	옥포 간경리 83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	0	30,000	
	옥포 송촌리 36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00	0	25,000	
	논공 상리 11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00	0	25,000	
	옥포 본리리 2404-4번지선 도로구조 개선공사	100,000	0	100,000	
	다사 서재리 신3-10번지 도로개설	30,000	0	30,000	
	가창 구국지도 우수관로 개량공사	398,000	0	398,000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정비공사	40,000	0	40,000	
	구지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	100,000	0	100,000	
	유가 용리 901번지선 인도개설공사	200,000	0	200,000	
	유가 음리 579-2번지 선 인도설치공사	40,000	0	40,000	
	구지 대암리 7-116번지 선 도로정비공사	40,000	0	40,000	
	유가 양1리 448번지 일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0,000	0	40,000	
	구지 수리리 175-4번지 일원 가각부 정비공사	100,000	0	100,000	
안전총괄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14,000	0	14,000	
	스마트 그늘막 추가설치 (예산성립전 사용)	17,000	0	17,000	
	폭염대응 물품 구입 (예산성립전 사용)	17,000	0	17,000	
	민방위교육장 정비	47,400	0	47,400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LS) 유지관리 용역	20,000	0	20,000	

부서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도시재생 거점시설(비상) 조성 집기 및 물품 구입	67,000	0	67,000	
	논공 다다촌 보도블럭 교체 공사	800,000	0	800,000	
	다사 죽곡리 옹벽 경관조명 설치 사업	30,000	0	30,000	
	금포2교차로 달성군청 안내 경관시설물 설치사업	40,000	0	40,000	
	가창 용계리 국지도 방음역 경관개선 사업	22,000	0	22,000	
	논공 삼리고 고속도로 교대 하부 경관개선사업	30,000	0	30,000	
	다사 서재 경관개선사업 기본구상 용역	100,000	0	100,000	
	다사 문양리(165번지선) 농로정비공사	220,000	0	220,000	
	다사 문양리(666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100,000	0	100,000	
	유가 양리(587번지선) 농로확장공사	260,000	0	260,000	
	유가 한정2리(243-3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170,000	0	170,000	
	옥포 본리리(1827번지선)농로개설공사	450,000	0	450,000	
	옥포 본리리(2292번지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00	0	100,000	
	현풍 원교리(103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10,000	0	110,000	
	현풍 지리(1158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00,000	0	100,000	
	현풍 대리(752-1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30,000	0	30,000	
도시정비과	현풍 대리(111-1번지선) 농로확장공사	170,000	0	170,000	
	가창 단산리(93-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50,000	0	50,000	
	가창 단산리(641-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00,000	0	100,000	
	가창 단산리(659번지선) 농로개설공사	30,000	0	30,000	
	가창 대일리(720번지선)농로개설공사	100,000	0	100,000	
	하빈 기곡1리(934-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20,000	0	20,000	
	하빈 대평리(895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120,000	0	120,000	
	하빈 무등1리(756-1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0	15,000	
	하빈 배수장 외 2개소 우수지 정비공사	500,000	0	500,000	
건축과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 (예산성립전 사용)	3,300	0	3,300	
하수하천과	20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 공사(예산성립전 사용)	110,000	0	110,000	

부서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장비 설치 공사	54,000	0	54,000	
	기세곡천 유희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	22,000	0	22,000	
	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300,000	0	1,300,000	
	현풍 오산1리 18번지선 오산소하천 정비공사	538,000	0	538,000	
	현풍 오산2리 582번지선 흘개소하천 정비공사	598,000	0	598,000	
	신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50,000	0	50,000	
	천내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000	0	100,000	
	현풍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2,000	0	22,000	
	기세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2,000	0	22,000	
	취양수장 시설 개선사업	22,000	0	22,000	
	구지 도동리 467번지선 절골소하천 제방사면 정비공사	138,000	0	138,000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구입			12,000	
	달천예술창작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	220,000	0	220,000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1,300,000	0	1,300,000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00,000	0	300,000	
문화예술과	현풍추보당 담장 긴급 보수	50,000	0	50,000	
	용연사 소방수 저류지 설치	150,000	0	150,000	
	현풍향교 관리사 보수정비	310,000	0	310,000	
	남평문씨본리세거지 현채가 보수	120,000	0	120,000	
	성주사 방재시스템 구축	257,850	0	257,850	
	달성 삼가현 고택 긴급 방충 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25,500	0	25,500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37,492천원)	58,920	0	58,920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111,020천원)	158,600	0	158,600	
체육진흥과	휠체어테니스단 장비 구입 (경기용 휠체어)	15,000	0	15,000	
	회원 본리리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50,000	0	50,000	

부서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다사체육공원 재조성 타당성검토 및 배치계획 수립 용역	22,000	0	22,000	
	회원테니스장 정비 공사	22,000	0	22,000	
	논공군민운동장 정비 공사	22,000	0	22,000	
	논공 축구장 및 테니스장 정비공사	22,000	0	22,000	
	회원 진천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 공사	120,000	0	120,000	
	가창 체육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공사	100,000	0	100,000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 공사	500,000	0	500,000	
관광과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확장 공사	215,000	0	215,000	
	동화마을 조성	70,000	0	70,000	
	가구 및 물품 구입비	70,000	0	70,000	
	구지오토캠핑장 외부 화장실 보수	16,000	0	16,000	
	구지오토캠핑장 위생시설 보수	24,000	0	24,000	
	강변오토캠핑장 위생시설 시트지 교체	5,000	0	5,000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	76,000	0	76,000	
	대구교도소 공개공지 산책로 조성	150,000	0	150,000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300,000	0	300,000	
	대구교도소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70,000	0	70,000	
산림과	이팝나무군락지 토지매입 등	2,500,000	0	2,500,000	
	산림재해대책비(응원헬기 비용 지원)	20,200	0	20,200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산불감시카메라)	180,000	0	180,000	
건강증진과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데크 등 옥상 철거공사	19,800	0	19,800	
농촌지도과	영농부산물 처리 파쇄기 구입	78,000	0	78,000	

#### 4.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96억 97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16억 2천 8백만 원에서 **1,680억 69백만 원이 증액**  
(증감율16.29%)되었습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0억 8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32억 13백만 원보다 **1,119억 88백만 원이 증액**  
되어 4,452억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억 42백만 원보다  
**43백만 원**이 증액되어 **18억 86백만 원**입니다.
- 검토보고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세출분야 중 신규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 경제산업과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지원 사업**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사업이며, 최근 소비·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15억(국비 450억, 시비 25억, 군비 25억, 군비 추가편성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구지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및 **구지농공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의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를 편성한 것이며, 금년에 설계용역 착수 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교통행정과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금년 사업 대상마을에 다사읍 문양리, 구지면 대암2리가 추가됨에 따라 증액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주민만족도 또한 높은 사업으로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교통지도과

- 하빈면 감문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인근 도로확장 공사의 완료시기를 고려하여 올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시설공사비를 예산 집행 시기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빈면 동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동곡칼국수거리의 주차 문제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 후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농업정책과

-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내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품구입, 한우사업 육성 사업 내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품구입,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사업 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이상의 3개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이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흑서기를 대비하여 추진 및 집행해야 하는 해당 사업의 특성 상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 위배됨은 없으나, 성립 전 예산은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행 내역 및 집행시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 건설과

- **논공 위천1리 위천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부분의 신규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편성사유입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 관리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 및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위 사업의 추경안 편성은 합목적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주 전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안전총괄과

- 민방위 교육장 정비 사업은 노후된 교육장을 보수 정비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파손된 가구 및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안 편성은 목적 적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사업, 폭염대응 물품 구입 이상의 3개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재원이 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상 위배됨은 없으나, 성립 전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내역 및 집행시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도시정책과

- 달성군 도시계획정보체계(UPIIS) 유지관리 용역은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사업이나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를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은 인정되나 추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지역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블럭 교체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사 죽곡리 옹벽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지속적인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목적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포2교차로 달성군청 안내 경관시설물 설치사업, 가창 용계리 국지도 방음벽 경관개선 사업, 논공 삼리교 고속도로 교대 하부 경관개선사업, 다사 서재 경관개선사업은 2026년도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 구상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개선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정비과

- 다사 문양리(165번지 선) 농로정비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보상완료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를 위한 사업비 편성, 설계용역완료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비 편성 등으로 정부정책인 ‘예산의 균형집행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집행 시기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 됨은 없으나, 연중 하반기에 해당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 검토 시에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 집행률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하수하천과

- 마을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장비 설치공사는 해킹 등 전산 보안을 위한 방화벽 및 보안장비 구축 비용으로 추경안 편성은 합목적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세곡천 유희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은 기세곡천 주변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으로 추경예산안의 목적 적합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대구시 지방하천종합정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2억 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13억 원(시비: 9.1억, 군비 3.9억)으로 광역보조금 교부에 따라 군비를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풍 오산1리 18번지 선 오산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완료에 따른 설계용역비,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 편성 등으로 정부 정책인 ‘예산의 균형집행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 시기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 검사 시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률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문화예술과

-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404호, 2025. 7. 31., 일부개정/시행 2025. 7. 31.)으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달성 100대 피아노’, ‘Yes! 키즈존’ 개최에 따른 행사차출 지급 경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4조(기준경비) 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호 ~ 제4호 생략 >

-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

#### [별표 7의 1]

행사 차출 지급경비

- ① 경비성격: 행사·축제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 ② 기 준 액: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본연의 업무로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대체휴무 및 관리업무수당과 병행 불가)

※ 국가 단위 행사를 위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 ③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 달천예술창작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시기적인 필요성과 목적 적합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토유산 보수정비,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현풍추보당, 현풍향교 관리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현채가 등 국가유산과 향토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긴급히 보수할 필요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체육진흥과**

- 휠체어테니스단 운영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인 휠체어테니스단의 경기용 휠체어의 노후에 따라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며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원 본리리 체육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화원 진천천 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가창 체육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공사, 금호강 고수부지 휴게공간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편성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논공군민운동장 정비공사, 논공 축구장 및 테니스장 정비공사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관광과

- 사육신기념관 주차장 확장 공사는 육신사 및 사육신 기념관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안전 문제와 시내버스 회차의 어려움,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화마을 조성 사업은 화원읍 소재 마비정 벽화마을을 동화테마의 벽화마을로 새롭게 리뉴얼하는 사업으로 기본 구상 용역완료에 따라 공사비 및 조형물 제작·설치비를 편성한 것으로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시기적인 필요성과 목적 적합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호강 캠핑장 조성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캠핑장 조성 불가 협의 결과에 따라 피크닉장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의 변경(당초 60억→변경 30억)과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시설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호강이라는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필요성 및 집행 시기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대구시와 함께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친수 거점지구’ 로의 변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화원지구) 관리 사업은 낙동강 수변(화원유원지)에 형성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처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은 카페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개관이 늦춰진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개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 공사는 대강당 및 중회의실 2개소를 증축하고 로비, 대강당 등의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비슬산 유스호스텔의 시설 보강을 통해 이용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시기적인 필요성과 목적 적합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교도소 공개공지 산책로 조성, 대구교도소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 화원 겨울빛으로(路) 조성 사업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교도소 부지 외벽을 따라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필요성 및 집행 시기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산림과**

-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 명소화 사업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명소인 옥포읍 교항리에 소재한 이팝나무 군락지가 사유지로 인한 접근제한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산림유전자원으로 보전하고 아울러, 관광명소화하는 데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팝나무 개화시기가 5월인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화시설 및 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소화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며, 당초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올해 전국을 뒤덮은 대형 산불 등의 위험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농촌지도과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2026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파쇄기 등의 구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기적으로는 농한기에 그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원활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종합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예산 책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p>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p> <p>① 정부는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li> <li>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li> </ol>	<p>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b>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b>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li> <li>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li> </ol>